

일본 ADR법상 인증제도의 현황과 과제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Japan's Accreditation System under the ADR Act

김 상 찬*
Sang-Chan Kim

〈목 차〉

- I. 서 론
- II. 인증제도의 의의와 인증ADR 사업자 현황
- III. 인증ADR 사업자의 ADR 실적
- IV. ADR인증제도에 관한 개정논의
- V. 결 론

주제어 : 일본, ADR, 인증제도, ADR법, 대체적분쟁해결, 사법제도,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서론

일본의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ADR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다. 일본 ADR법의 제정 연원은 사법제도개혁심회의의 의견이다. 2001년 6월 사법제도개혁심회의건의서의 제안에 따라,¹⁾ 내각에 사법제도개혁추진본부가 설치되고 그 안에 설치된 ADR검토회는 3년여 동안 38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ADR의 충실·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²⁾ 이 검토회의 논의를 통하여 국회에 제출된 ADR법은 2004년 11월에 의결되고 같은 해 12월 1일에 공포되어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본 ADR법은 오랜 검토과정을 거쳐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ADR법에는 많은 과제를 안고 출발하고 있었다. 사법제도개혁심회의에서 깊은 논의가 있었던 집행력의 부여문제나 법률구조의 대상화 등은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ADR을 담당할 인재의 육성이나 UNCITRAL 국제상사조정모델법을 모범으로 한 조정절차법적 규칙의 정비 등이 중장기적인 과제로 남아있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ADR법은 전례 없는 새로운 방식의 제도이며 미래를 향한 ‘열린제도’로서 평가되고 있다.⁴⁾ 최근에는 ADR에 대해서 새로운 기대가 증대하고 있다. 그것은 법원에 있어서의 민사소송사건 등의 동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⁵⁾ 한편 사회적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고 충분한 자력이 없는 시민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ADR법 입법 당시보다 ADR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⁶⁾

ADR법은 부칙 2조에서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이 법률의 시행 상황에 관하여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초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ADR법 제정 시에 남아 있었던 과제나 최근의 새로운 동향으로 인하여 개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일본 학계는 2004

1) 일본 사법제도개혁심회의의 논의의 경위, 그 제안에 대하여 자세히는, 竹下守夫, “司法制度改革審議會における審議過程からみたADR法の状況”, 『仲裁とADR』, 第5號, 仲裁ADR協會, 2010, 1面 이하 참조

2) ADR검토회의 논의의 경위, 그 제안의 취지 및 현상에 대한 평가에 관해서는, 青山善充, “ADR検討會の議論からみたADR法の現状”, 『仲裁とADR』, 第5號, 仲裁ADR協會, 2010, 8面 이하 참조

3) 小林徹, “日本におけるADRの將來に向けて-‘ADR検討會’座長レポート-”, 『裁判外紛争解決促進法』, 商事法務, 2005, 515面 이하; 山本和彦,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促進に關する法律の意義と今後の課題”, 『法律のひろば』, 第58卷 第4號, きょうせい, 22面 이하 참조.

4) 山田文, “ADR法制定と理論的問題”, 『法律時報』, 第77卷 第2號, 日本評論社, 2005.2, 37面; 町村泰貴, “ADR新時代”, 『ジュリスト』, 第1317號, 有斐閣, 165面 참조.

5) 구체적으로는 사건수의 본격적인 증가나 사건내용의 복잡·전문화 등 질적·양적으로 법원의 부담이 증대되었다는 문제이다(山本和彦·山田文, 『ADR仲裁法』, 日本評論社, 2008, 94面 以下).

6) 山本和彦, “民事訴訟法10年”, 『判例タイムス』, 第1261號, 90面.

년에 회원수 400여명의 ‘중재ADR법학회’를 설립하고 세미나와 포럼, 학술지 ‘중재와 ADR’⁷⁾을 통하여 ADR법의 입법개선,⁸⁾ 정책제언, 운용개선 등에 지속적으로 행해 왔다. 또한 2010년 9월에는 ADR 진흥을 위하여 26개 ADR기관을 회원으로 하는 ‘일본ADR협회’를 결성하고 활동하고 있으며,⁹⁾ 이 협회는 2012. 4. 2.에 ‘ADR법의 개정을 향하여’라는 제언서를 법무성에 제출하고 있다.¹⁰⁾

본고에서는 일본ADR법의 개정논의와 관련하여, ADR법상 중요한 제도 중의 하나인 인증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와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고찰하려 한다. 본고와 유사한 내용을 다룬 국내의 논문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일본의 ADR법에 대하여 소개한 논문¹¹⁾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민간형 ADR의 발전을 위해서는 ADR기본법을 제정해야한다는 논의¹²⁾가 일찍부터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ADR기본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ADR기본법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 때 ADR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는 ADR법의 핵심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의 ADR법상 인증제도가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는 본고의 논의는 향후 우리나라의 ADR법을 제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인증제도의 의의와 인증ADR 사업자 현황

1. 인증제도의 의의

일본 ADR법은 민간형 ADR기관이 ‘화해의 중개업무’에 관하여 법무장관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민간형 조정의 인증구조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동법 제5조) 이 제도가 가지는 의의는 개별 ADR기관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의 확보 및 ADR에 대한 법적 효력의

-
- 7) 일본 ‘중재ADR법학회’는 학술지 ‘仲裁とADR’을 6회 발간하였고, 현재 7호 발간작업 중이다.
- 8) 한 예로서, 山本和彦 外, “ADR法施行3年を経て”, 『仲裁とADR』 第5號, 仲裁ADR協會, 2010, 35面 이하.
- 9) 이 협회에 관해서 자세히는, 山田文, “日本ADR協會の設立について”, 『法の支配』第161號, 2011, 8面; 河井聰, “日本ADR協會に期待される役割と活動について”, 『仲裁とADR』 第6號, 仲裁ADR協會, 2011, 92面 참조.
- 10) 이 제언의 내용은 일본ADR법학회(JADRA) 홈페이지(<http://japan-adr.or.jp/?p=603>)에 게시되고 있다. 이 제언의 배경 및 경위에 대해서는, 垣内秀介, “提言「ADR法の改正に向けて」について”, 『NBL』 第975號, 商事法務, 2012. 4, 8면 이하 참조.
- 11) 대표적인 것으로, 김상찬, “일본의 ADR법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6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6.12, 127-160면; 최건호, “일본의 ADR제도”, 『민사소송』 제10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6. 5, 288-326면이 있으며, 일본ADR법상 인증제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되고 있다.
- 12) 우리나라의 ADR법의 입법론에 대하여는, 전병서, 『대체적분쟁해결처리제도(ADR)도입방안』(용역보고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5, 199-202면; 정선주, “ADR통일절차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민사소송』 제11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6. 5, 284면 이하; 김상찬, “ADR기본법의 입법론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4. 2, 157면 이하 참조.

부여로 이용상황을 개선하는데 있다. 민간분쟁해결절차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절차 선택의 표준을 제공함과 동시에 각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시효중단효 등 법적 효과의 부여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리를 향상시키고 이용의 인센티브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일본 ADR법에서는 민간분쟁해결절차의 업무의 적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정하고 그 업무가 그에 적합하다는 것을 국가가 확인하며, 그 확인을 받은 업무를 위와 같은 조치 및 특례의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있다.¹³⁾ 이러한 인증제도는 민간분쟁해결절차의 이용을 촉진하려는 수단 중의 하나이며, 인증신청 여부는 사업자의 임의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¹⁴⁾

인증제도의 일반적 의의는 개별 ADR기관에 대한 신뢰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종래 ADR의 이용이 저조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개별 ADR기관에 대한 신뢰의 불충분한 때문이었으므로 인증제도가 갖는 의의는 크다. 말하자면 ADR이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고, 이 인증제도는 그러한 수요에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⁵⁾

2. ADR인증신청 및 인증처분 현황

ADR법이 시행된 2007년 4월부터 인증업무가 시작되었는데, 2010년 6월말 현재 ADR인증 신청 및 인증처분의 상황은 <표1>과 같다. 인증신청과 인증처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현재까지 신청건수는 141건이며 이중 112개의 민간사업자의 업무가 인증되었다.¹⁶⁾ 구체적인 인증분쟁해결사업자는 <표2>와 같다.

13) 최건호, 전계논문, 293면.

14) 内堀宏達,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關する法律の概要”, 『法律のひろば』, ぎょうせい, 2005.4 6면.

15) 물론 이러한 인증제도가 필요한 것인가 또 필요하다고 해도 그것을 국가가 하는 것이 적당한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ADR의 선택은 성질상 시장에 맡겨야 하고 각 ADR기관이 서비스의 경쟁을 통하여 자연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분쟁해결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 결과를 나타내기 어렵고 서비스 질에 대한 판정이 곤란하며, 국민이 ADR에 충분히 익숙해 있지 않는 단계에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인증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 제도가 정착된 단계에서는 민간차원에서 ADR기관을 인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山本和彦, 前掲 “裁判外紛争解決手段の利用の促進に關する法律の今後の課題”, 19면).

16) 지금까지 114개 기관이 인증받았지만 인증 제2호인 오사카변호사회는 인증 제43호인 종합분쟁해결센터의 발족에 따라 그 분쟁해결업무를 종료했고(深山卓也, “法務省からみたADR法の現状”, 『仲裁とADR』第5號, 仲裁ADR協會, 2010, 14면이하), 인증제15호 일본증권협회는 이를 사실상 승계한 특정비영리법인증권·금융상품알선상담센터가 설립되면서 2011년부터 업무를 폐지하였다.

〈표1〉 신청건수 및 인증분쟁해결사업자 수(2012. 6. 30. 현재)¹⁷⁾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6	계
신청건수	19	25	34	34	20	9	141
인증사업자수	10	16	38	32	16	2	114

※ 이중 2개 기관이 업무를 폐지하여 현재 112개 기관이다.

인증을 받은 ADR사업자는 2007년 10건, 2008년 16건, 2009년 38건, 2010년 32건, 2011년 16건, 2012년 2건으로, 인증건수가 급속도로 증가되다가 2009년을 기점으로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인증사업자가 취급하는 분쟁분야의 범위를 보면 스포츠분쟁, 제조물책임분쟁, 토지경계분쟁, 특정상거래분쟁, 하도급거래분쟁, 노동관계분쟁, 금융상품분쟁, 소프트웨어관계분쟁, 부부관계분쟁, 사업재생관계분쟁, 맨션분쟁, 외국인직장관계분쟁, 유학분쟁, 의료분쟁, 공제계약분쟁 등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절대수에서 보면 이른바 사업단체 관계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여 전 인증사업자의 78.5%(88개 사업자)을 차지한다.¹⁸⁾ ‘중재ADR법학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¹⁹⁾ 각 사업자는 소규모인 경우가 많고 주로 ADR사업과 관계된 사무담당자는 2인 이하의 기관이 과반수이고, 3인 이하인 곳이 80%이다. 각 사업자의 예산도 500만엔 이내의 기관이 약 60%, 1,000만엔 이내의 기관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표2〉 2012. 6. 현재 인증분쟁해결사업자 현황(112개 사업자)

인증번호	인증일	사업자명	분쟁의 종류
1	2007. 9. 4.	일반재단법인 일본스포츠중재기구	스포츠관련 분쟁
3	2007. 9. 21.	재단법인가전제품협회(가전제품PL센터)	제조물책임관련 분쟁
4	2007. 11. 5.	재단법인 자동차제조물책임상담센터	제조물책임관련 분쟁
5	2007. 11. 16.	교토변호사회	민사관련 분쟁
6	2007. 12. 17.	오사카토지가옥조사사회	토지경계관련 분쟁

17) <http://japan-adr.or.jp/KANBOU/ADR/> 일본법무성의 인증이나 분쟁해결 실적에 대한 연도구분은 당해년도 4월 1일부터 다음 년도 3월말까지로 계산하고 있다.

18) 사회보험노동사회 관계 40개 기관, 사법서사회 관계 17개 기관, 토지가옥조사사회 관계 16개 기관, 행정서사회 관계 9개 기관, 변호사회관계 6개 기관 등 88개 기관이다.

19) 山本和彦, “認證ADR事業者に対するアンケート結果の概要”, 『仲裁とADR』 第5號, 仲裁ADR協會, 2010, 66面 이하 참조(2009년 10월말 현재 인증받은 47개 사업자에 대하여 조사한 앙케이트조사로써 37개 사업자로부터 회답이 있었다(회답률 79%). 각 개별기관의 앙케이트 결과에 대해서는 “認證ADR機關アンケート結果”, 『仲裁とADR』 第5號, 仲裁ADR協會, 2010, 69面 이하 참조.

인증번호	인증일	사업자명	분쟁의 종류
7	2007. 12. 27.	일반사단법인일본상사중재협회	상사분쟁
8	2008. 1. 25.	에히메현 토지가옥조사사회	토지경계관련 분쟁
9	2008. 3. 14.	요코하마 변호사회	민사관련 분쟁
10	2008. 3. 19.	사단법인일본소비생활어드바이스·건설턴트협회	특정상거래관련 분쟁
11	2008. 5. 14.	재단법인전국중소기업거래진흥협회	도급거래관련 분쟁
12	2008. 6. 2.	아이치현변호사회	민사관련 분쟁
13	2008. 6. 9.	교토부사회보험노무사회	노동관련 분쟁
14	2008. 6. 13.	카나가와현사법서사회	민사관련 분쟁(소액)
15	2008. 7. 28.	일본증권협회	금융상품거래관련 분쟁
16	2008. 7. 9.	재단법인토쿄토중소기업진흥공사	도급거래관련 분쟁
17	2008. 7. 11.	전국사회보험노무사회연합회	노동관계 분쟁
18	2008. 7. 28.	재단법인소프트웨어정보센터	소프트웨어관련 분쟁
19	2008. 9. 22.	사단법인일본산업카운셀러협회	노동관계 및 부부관계 분쟁
20	2008. 9. 24.	효고현변호사회	민사관련 분쟁
21	2008. 10. 29.	사업재생실무가협회	사업재생관련 분쟁
22	2008. 12. 10.	토쿄사법서사회	민사관련 분쟁
23	2008. 12. 24.	특정비영리활동법인후쿠오카맨션영리조합연합회	맨션관련 분쟁
24	2008. 12. 26.	오кина와현사회보험노무사회	노동관계 분쟁
25	2009. 1. 19.	시즈오카현사법서사회	민사관련 분쟁(소액)
26	2009. 1. 20.	시가현사법서사회	민사관련 분쟁(소액)
27	2009. 4. 15.	사단법인가정문제정보센터	부부관계관련 분쟁
28	2009. 5. 18.	가고시마현사회보험노무사회	노동관계 분쟁
29	2009. 5. 19.	시가현토지가옥조사사회	토지경계관련 분쟁
30	2009. 5. 25.	토쿄도행정서사회	외국인직장환경, 자동차사고, 애완동물, 보증금반환
31	2009. 6. 1.	도쿠시마현토지가옥조사사회	토지경계관련 분쟁
32	2009. 6. 19.	특정비영리활동법인유학협회	유학관련 분쟁
33	2009. 6. 26.	특정비영리활동법인개별노사분쟁처리센터	노동관계 분쟁
34	2009. 8. 13.	아이치현사회보험노무사회	노동관계 분쟁
35	2009. 8. 14.	오사카부사회보험노무사회	노동관계 분쟁
36	2009. 8. 17.	치바현토지가옥조사사회	토지경계관련 분쟁

인증번호	인증일	사업자명	분쟁의 종류
37	2009. 8. 17.	효고현사회보험노무사회	노동관계 분쟁
38	2009. 8. 19.	후쿠오카현사회보험노무사회	노동관계 분쟁
39	2009. 8. 27.	치바현사회보험노무사회	노동관계 분쟁
40	2009. 9. 8.	쿠마모토현사법서사회	민사관련 분쟁(소액)
41	2009. 9. 14.	카나가와현사회보험노무사회	노동관계 분쟁
42	2009. 9. 14.	미야기현사법서사회	민사관련 분쟁(소액)
43	2009. 9. 14.	공익사단법인종합분쟁해결센터	민사관련 분쟁
44	2009. 10. 15.	야마카타현사회보험노무사회	노동관계 분쟁
45	2009. 10. 16.	토쿄사회보험노무사회	노동관계 분쟁
46	2009. 10. 20.	합동회사컨설팅센터	상속관계 분쟁
47	2009. 10. 23.	카나가와현토지가옥조사사회	토지경계관련 분쟁
48	2009. 11. 30.	야마구치현사법서사회	민사관련 분쟁(소액)
49	2009. 12. 1.	후쿠시마현사회보험노무사회	노동관계 분쟁
50	2009. 12. 1.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사분쟁연구회	의료분쟁
51	2009. 12. 18.	나가노현토지가옥조사사회	토지경계관련 분쟁
52	2009. 12. 18.	이바라키현사회보험노무사회	노동관계 분쟁
53	2009. 12. 18.	사이타마현사회보험노무사회	노동관계 분쟁
54	2010. 1. 22.	후쿠시마현사법서사회	민사관련 분쟁(소액)
55	2010. 1. 22.	후쿠오카현사법서사회	민사관련 분쟁(소액)
56	2010. 1. 22.	특정비영리활동법인증권·금융상품알선상담센터	금융상품거래관련 분쟁
57	2010. 1. 26.	사단법인일본공제협회	공제계약관련 분쟁
58	2010. 2. 10.	니가타현사회보험노무사회	노동관계 분쟁
59	2010. 2. 10.	히로시마현사회보험노무사회	노동관계 분쟁
60	2010. 2. 10.	기후현사회보험노무사회	노동관계 분쟁
61	2010. 2. 10.	이시카와현사회보험노무사회	노동관계 분쟁
62	2010. 3. 1.	아이치현행정서사회	외국인 직장환경, 자동차사고, 애완동물, 보증금반환 분쟁
63	2010. 3. 17.	토야마현사법서사회	민사관련 분쟁(소액)
64	2010. 3. 23.	미야기현토지가옥조사사회	토지경계관련 분쟁
65	2010. 4. 1.	쿄토토지가옥조사사회	토지경계관련 분쟁
66	2010. 4. 5.	쿠마모토현사회보험노무사회	노동관계 분쟁

인증 번호	인증일	사업자명	분쟁의 종류
67	2010. 4. 5.	홋카이도사회보험노무사회	노동관계 분쟁
68	2010. 4. 21.	쿄토부행정서사회	외국인의 가사관련 분쟁
69	2010. 4. 21.	야마쿠치현사회보험노무사회	노동관계 분쟁
70	2010. 4. 26.	니카타현행정서사회	외국인직장환경, 자동차사고, 애완동물, 보증금반환 분쟁
71	2010. 5. 10.	고우지현사회보험노무사회	노동관계 분쟁
72	2010. 5. 25.	와카야마현행정서사회	외국인직장환경, 자동차사고 관련 분쟁
73	2010. 8. 4.	미에현사회보험노무사회	노동관계 분쟁
74	2010. 8. 6.	오카야마현행정서사회	자동차사고관련 분쟁
75	2010. 8. 13.	미야기현사회보험노무사회	노동관계 분쟁
76	2010. 8. 25.	공익사단법인일본부동산감정사협회연합회	부동산가격관련 분쟁
77	2010. 9. 13.	일반사단법인일본유통자주관리협회	상품매매계약관련 분쟁
78	2010. 9. 15.	시즈오카현토지가옥조사사회	토지경계관련 분쟁
79	2010. 9. 15.	시가현사회보험노무사회	노동관계 분쟁
80	2010. 9. 16.	토야마현사회보험노무사회	노동관계 분쟁
81	2010. 10. 12.	코우지현토지가옥조사사회	토지경계관련 분쟁
82	2010. 10. 25.	카가와현토지가옥조사사회	토지경계관련 분쟁
83	2010. 12. 24.	스즈오카현사회보험노무사회	노동관계 분쟁
84	2010. 12. 27.	카나가와현행정서사회	외국인직장환경, 자동차사고 관련 분쟁
85	2011. 1. 12.	에히메현사회보험노무사회	노동관계 분쟁
86	2011. 2. 8.	이바타키토지가옥조사사회	토지경계관련 분쟁
87	2011. 2. 8.	군마현사회보험노무사회	노동관계 분쟁
88	2011. 2. 14.	미야기현사회보험노무사회	노동관계 분쟁
89	2011. 2. 25.	미야기현사법서사회	민사관련 분쟁(소액)
90	2011. 3. 9.	치바사법서사회	민사관련 분쟁(소액)
91	2011. 3. 16.	카고시마현사법서사회	민사관련 분쟁(소액)
92	2011. 3. 22.	야마나시현사회보험노무사회	노동관계 분쟁
93	2011. 2. 23.	아키타현사회보험노무사회	노동관계 분쟁
94	2011. 3. 29.	후쿠오카현변호사회	민사관련 분쟁
95	2011. 3. 29.	토치기현토지가옥조사사회	토지경계관련 분쟁

인증번호	인증일	사업자명	분쟁의 종류
96	2011. 3. 29.	아이치현토지가옥조사사회	토지경계관련 분쟁
97	2011. 4. 11.	시마네현사회보험노무사회	노동관계 분쟁
98	2011. 4. 11.	카가와현사회보험노무사회	노동관계 분쟁
99	2011. 4. 11.	나가노현사회보험노무사회	노동관계 분쟁
100	2011. 6. 2.	오카야마현사회보험노무사회	노동관계 분쟁
101	2011. 6. 29.	삿포로사법서사회	민사관련 분쟁(소액)
102	2011. 8. 1.	나라현사회보험노무사회	노동관계 분쟁
103	2011. 9. 1.	이바라키현사법서사회	민사관련 분쟁(소액)
104	2011. 9. 1.	변호사법인TLEO虎門법률경제사무소	상속관련 분쟁
105	2011. 9. 1.	돗토리현사회보험노무사회	노동관계 분쟁
106	2011. 10. 3.	일반사단법인유니온디아프리카	상표, 부정경쟁방지법관련 분쟁
107	2011. 11. 9.	이시카와현토지가옥조사사회	토지경계관련 분쟁
108	2011. 11. 11.	쿄토사법서사회	민사관련분쟁(가사사건제외)
109	2012. 2. 6.	카가와현사법서사회	민사관련 분쟁(소액)
110	2012. 2. 17.	와카야마현사회보험노무사회	노동관계 분쟁
111	2012. 2. 22.	효고현행정서사회	외국인직장환경, 자동차사고, 애완동물, 보증금관련 분쟁
112	2012. 2. 24.	학교법인릿쿄학원	여행, 숙박업계약관련 분쟁
113	2012. 4. 17.	일반사단법인일본기업재건연구회	중소기업사업승계관련 분쟁
114	2012. 6. 4.	사이타마현행정서사회	부부, 상속, 자동차사고, 보증금관련 분쟁
계		112	

※ 위에서 민사관련분쟁(소액)은 분쟁목적 금액이 140만엔 이하를 의미한다.

3. ADR인증신청 및 인증처분 경향

ADR 인증신청 및 처분경향에 대해서는 다음 3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전문분야와 관계된 분쟁처리에 특화된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ADR인증의 취득이 증가하고 있고 인증분쟁해결사업자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표2>에서 보듯이 인증분쟁해결사업자가 취급하는 분쟁의 전문분야는 ADR 인증제도가 시작된 2007년도 이후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둘째, 국가의 특정한 시책과 관련된 ADR인증의 취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재단법인전국중소기업거래진흥협회(<표2> 인증번호 제11호)는 중소기업청의 시책인 ‘도급적정거래추진센터정비사업’²⁰⁾을 실시하기 위하여 ADR인증을 취득한 것이다. 또한, 사업재생실무가협회(<표2> 인증번호 제21호)는 ‘산업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른바 ‘産活法’)에 근거하여 특정인증 ADR절차(이른바 ‘사업재생ADR’)를 행하기 위하여 ADR인증을 취득한 것이다. 특정인증 ADR절차는 사업재생에 관한 분쟁을 취급하는 인증분쟁해결사업자가 경제산업성장관의 인정을 받아서 행하는 ADR절차이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업재생절차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이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이른바 인접법률전문직 단체에 의한 ADR인증의 취득이 활발하다는 것이다. 2010.6.현재 10개의 사법서사회(법무사회), 9개의 토지가옥조사사회, 23개의 사회보험노동사회, 5개의 행정서사회가 인증을 취득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사법제도개혁심의회 의견서 및 사법제도개혁추진계획(2002.3.19. 각료회의 결정)에 의하여 “ADR을 포함한 소송절차외의 법률사무에 관하여 인접법률전문직 등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의 활용을 도모하도록” 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4. 향후의 증가추이

국민 개개인의 요구에 부응하여 다양한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면 ADR 인증제도에 있어서도 다양한 인증분쟁해결사업자가 다수 존재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인증분쟁해결사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다양화·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인증분쟁해결사업자수는 아직까지 112개 정도이며, 지역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도도부현(都道府縣)에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법무성은 향후 중소도시 내지 농촌지역에도 인증ADR기관이 설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²¹⁾ 그러나 인증제도가 시행된 후 5년이 지나고 있으며, 비교적 많은 ADR 기관이 인증을 받고 있어서, 인증신청의 증가속도는 갈수록 완만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20) 이 ‘도급적정거래추진센터정비사업’은 ‘도급적정거래추진센터’를 정비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상담창구, ADR에 의한 분쟁해결, ‘도급적정거래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보급·계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1) 일본 법무성에서는 인증사업자를 위하여 인증신청에 관하여 면담, 전화,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사전상담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0. 3. 31.까지 183개 단체 316회의 면담상담을 실시하였다(高松宏之, “ADR認證制度の現状” 『法律のひろば』, 第63卷 第9號, ぎょうせい, 2010.9, 14面).

Ⅲ. 인증ADR 사업자의 ADR 실적

1. 인증ADR절차 건수

인증ADR사업자의 ADR 취급건수는 비교적 적은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취급건수 100건을 넘는 몇몇 인증기관을 제외하면 한자리수의 취급건수를 갖는 기관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²²⁾ 이 기관들에서는 상담건수는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ADR 건수는 많지 않다.²³⁾

인증ADR사업자의 취급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표3>과 같다.²⁴⁾ 2007년도는 ADR인증제도의 시작년도이고 인증ADR사업자도 10개 사업자에 불과하여 접수건수 68건, 종료건수 34건 정도였으나, 2008년에는 인증분쟁해결절차사업자가 26개, 접수건수 721건, 종료건수 51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²⁵⁾ 또한 2009년에도 인증분쟁해결사업자는 64개 사업자로 크게 증가하여 취급건수도 접수건수 867건, 종료건수 861건으로 증가했는데, 2009년의 인증은 8월 이후에 집중되었기 때문인지 전년도만큼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았으며, 2010년도 96개 사업자로 접수건수 1,117건, 종료건수 1,031건으로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표3> 인증분쟁해결사업자 취급건수²⁶⁾

번호	인증일	사업자명	2007		2008		2009		2010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1	2007. 9. 4.	일반재단법인 일본스포츠중재기구	3	2	2	3	3	2	0	1
2	2007. 9. 19.	오사카변호사회	43	23	94	93	12	33	-	-
3	2007. 9. 21.	재단법인가전제품협회	2	1	7	6	2	3	6	6

22) 앞의 앙케이트 조사에서도 0건을 포함해서 한자리수의 기관이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23) 예컨대 2008년의 경우, 가전제품협회는 상담건수 2,206건인데 비해 ADR은 7건, 자동차제조물책임상담센터는 상담건수 2,957건에 대하여 ADR은 15건, 일본소비생활어드바이스컨설턴트협회(NACS)는 상담건수 2,265건에 ADR은 3건이다. 동일한 경향은 인증기관이외에서도 볼 수 있는데 금융기관ADR(2008년)에서는 전국은행협회의 상담건수 41,636건에 비하여 분쟁안건은 30건, 손해보험협회는 상담건수 76,193건에 대하여 39건, 생명보험협회는 상담건수 10,100건에 대하여 82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관계ADR전체의 상담건수 187,821건에 비하여 분쟁안건은 553건, 약 0.3%에 그치고 있다(山本和彦, “ADR法の現状と課題”, 『法律のひろば』, 第63巻 第9號, ぎょうせい, 2010.9, 4面).
 24) 2009년도의 처리실적에서, 사업년도의 관계까지 아직 실적이 판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비영리활동법인유학협회(<표1>인증번호 제32호)와 合同會社컨설팅센터(<표1>인증번호 제46호)는 제외했다.
 25) 2008년의 통계에 대하여 자세한, 深山卓也, 前掲論文, 18面 이하 참조.
 26) 이 표는 2007년부터 2009까지는 深山卓也, 上掲論文, 18面 이하; 高松宏之, 前掲論文, 15面를 참조하였고,

번호	인증일	사업자명	2007		2008		2009		2010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4	2007. 11. 5.	재단법인자동차제조물책임 상담센터	5	3	15	15	10	10	7	9
5	2007. 11. 16.	교토변호사회	9	4	32	26	46	46	48	50
6	2007. 12. 17.	오사카토지가옥조사사회	3	1	4	6	8	6	2	4
7	2007. 12. 27.	일반사단법인일본상사중재협회	1	0	2	3	1	1	1	1
8	2008. 1. 25.	에히메현 토지가옥조사사회	0	0	7	4	2	3	1	2
9	2008. 3. 14.	요코하마 변호사회	2	0	24	25	41	37	33	33
10	2008. 3. 19.	사단법인일본소비생활어드바이 스·컨설턴트협회	0	0	3	3	3	3	3	3
11	2008. 5. 14.	재단법인전국중소기업거래 진흥협회	-	-	19	16	37	35	26	27
12	2008. 6. 2.	아이치현변호사회	-	-	257	173	287	269	257	277
13	2008. 6. 9.	교토부사회보험노무사회	-	-	0	0	2	2	0	0
14	2008. 6. 13.	카나가와현사법서사회	-	-	5	5	4	4	4	3
15	2008. 7. 28.	일본증권협회	-	-	220	120	170	253	-	-
16	2008. 7. 9.	재단법인토쿄도중소기업진흥공사	-	-	12	10	12	14	16	15
17	2008. 7. 11.	전국사회보험노무사회연합회	-	-	0	0	0	0	1	1
18	2008. 7. 28.	재단법인소프트웨어정보센터	-	-	0	0	2	2	1	1
19	2008. 9. 22.	사단법인일본산업카운셀러협회	-	-	0	0	0	0	2	1
20	2008. 9. 24.	효고현변호사회	-	-	10	5	6	8	10	10
21	2008. 10. 29.	사업재생실무가협회	-	-	3	0	18	18	6	5
22	2008. 12. 10.	토쿄사법서사회	-	-	5	2	17	13	12	11
23	2008. 12. 24.	특정비영리활동법인후쿠오카맨 션영리조합연합회	-	-	0	0	3	3	8	7
24	2008. 12. 26.	오키나와현사회보험노무사회	-	-	0	0	0	0	1	1
25	2009. 1. 19.	시즈오카현사법서사회	-	-	0	0	2	2	19	16
26	2009. 1. 20.	시가현사법서사회	-	-	0	0	1	1	7	3
27	2009. 4. 15.	사단법인가정문제정보센터	-	-	-	-	14	14	16	15
28	2009. 5. 18.	가고시마현사회보험노무사회	-	-	-	-	0	0	1	1
29	2009. 5. 19.	시가현토지가옥조사사회	-	-	-	-	0	0	2	0
30	2009. 5. 25.	토쿄도행정서사회	-	-	-	-	3	3	10	8
31	2009. 6. 1.	도쿠시마현토지가옥조사사회	-	-	-	-	1	0	2	3

번호	인증일	사업자명	2007		2008		2009		2010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32	2009. 6. 19.	특정비영리활동법인유학협회	-	-	-	-	-	-	0	0
33	2009. 6. 26.	특정비영리활동법인개별노사분쟁처리센터	-	-	-	-	2	2	0	0
34	2009. 8. 13.	아이치현사회보험노무사회	-	-	-	-	3	3	2	2
35	2009. 8. 14.	오사카부사회보험노무사회	-	-	-	-	3	1	3	5
36	2009. 8. 17.	치바현토지가옥조사사회	-	-	-	-	6	4	6	5
37	2009. 8. 17.	효고현사회보험노무사회	-	-	-	-	1	1	0	0
38	2009. 8. 19.	후쿠오카현사회보험노무사회	-	-	-	-	4	4	16	16
39	2009. 8. 27.	치바현사회보험노무사회	-	-	-	-	0	0	2	1
40	2009. 9. 8.	쿠마모토현사법서사회	-	-	-	-	3	3	2	2
41	2009. 9. 14.	카나가와현사회보험노무사회	-	-	-	-	0	0	3	3
42	2009. 9. 14.	미야기현사법서사회	-	-	-	-	0	0	1	1
43	2009. 9. 14.	공익사단법인종합분쟁해결센터	-	-	-	-	86	47	140	150
44	2009. 10. 15.	야마카타현사회보험노무사회	-	-	-	-	0	0	0	0
45	2009. 10. 16.	토쿄사회보험노무사회	-	-	-	-	1	1	3	3
46	2009. 10. 20.	합동회사컨설팅센터	-	-	-	-	-	-	24	16
47	2009. 10. 23.	카나가와현토지가옥조사사회	-	-	-	-	0	0	2	1
48	2009. 11. 30.	야마구치현사법서사회	-	-	-	-	0	0	0	0
49	2009. 12. 1.	후쿠시마현사회보험노무사회	-	-	-	-	0	0	1	0
50	2009. 12. 1.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사분쟁연구회	-	-	-	-	7	5	31	25
51	2009. 12. 18.	나가노현토지가옥조사사회	-	-	-	-	0	0	0	0
52	2009. 12. 18.	이바라키현사회보험노무사회	-	-	-	-	0	0	0	0
53	2009. 12. 18.	사이타마현사회보험노무사회	-	-	-	-	0	0	0	0
54	2010. 1. 22.	후쿠시마현사법서사회	-	-	-	-	1	1	6	5
55	2010. 1. 22.	후쿠오카현사법서사회	-	-	-	-	3	2	11	12
56	2010. 1. 22.	특정비영리활동법인증권·금융상품알선상담센터	-	-	-	-	38	2	309	226
57	2010. 1. 26.	사단법인일본공제협회	-	-	-	-	2	0	14	12
58	2010. 2. 10.	니가타현사회보험노무사회	-	-	-	-	0	0	0	0
59	2010. 2. 10.	히로시마현사회보험노무사회	-	-	-	-	0	0	0	0
60	2010. 2. 10.	기후현사회보험노무사회	-	-	-	-	0	0	6	5

번호	인증일	사업자명	2007		2008		2009		2010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90	2011. 3. 9.	치바사법서사회							5	3
91	2011. 3. 16.	카고시마현사법서사회							0	0
92	2011. 3. 22.	야마나시현사회보험노무사회							0	0
93	2011. 3. 29.	아키타현사회보험노무사회							0	0
94	2011. 3. 29.	후쿠오카현변호사회							0	0
95	2011. 3. 29.	토치기현토지가옥조사사회							0	0
96	2011. 3. 29.	아이치현토지가옥조사사회							0	0
		계	68	34	721	515	867	861	1,117	1,031

<표3>을 보면 인증ADR사업자 간에 취급건수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일본증권협회(이를 사실상 승계한 특정비영리법인증권·금융상품알선상담센터)나 각 지역 변호사회와 같이 ADR인증 취득 전부터 ADR기관으로서 실적을 쌓아오던 사업자가 상당한 정도의 실적을 올리는데 비하여, 인증취득과 동시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아직 충분한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2010년이나 2009년의 취급건수의 증가가 2008년의 취급건수의 증가와 비교할 때 증가폭이 낮은 것은 이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 상담활동

ADR법은 인증의 대상으로 하는 민간분쟁해결절차를 ‘화해의 중개’를 행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만(법 제2조 제1호), 인증ADR사업자 중에는 상담활동을 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2009년도에는 ADR절차의 접수건수 뿐만 아니라 상담건수를 조사하고 있는 바, 인증ADR사업자 전체로는 ADR절차의 접수건수가 867건인데 반하여 상담건수는 17,105건에 이르고 있다.²⁷⁾ 이 데이터는 상당수의 분쟁이 접수 전에 상담단계에서 사실상 해결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²⁸⁾

2010년 통계는 日本法務省 홈페이지(<http://japan-adr.or.jp/KANBOU/ADR/>)를 참조하여 재구성하였다.

27) 인증분쟁해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법무성에서 자료를 집계하고 있는데, 상담건수는 사업보고서상 법정 보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로부터 임의로 청취한 건수에 불과하고 사업자에 따라서는 보고가 되지 않거나 ADR 상담 이외의 일반상담 건수를 포함하여 보고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정확한 통계는 없다고 한다.

28) 仲裁ADR法學會編, 『仲裁とADR』, 第5號, 仲裁ADR協會, 2010, 43面 山本발언, 靑山발언, 橫山발언) 참조.

3. 종료사유

사건처리 결과를 보면, 합의 성립이 2007년에는 32.4%, 2008년에는 40.4%, 2009년에는 39.0%, 2010년에는 38.7%로 나타나고 있다. 불성립의 경우, 2007년에는 23.5%, 2008년에는 26.8%, 2009년에는 31.0%, 2010년에는 23.6%로 나타나고 있다.²⁹⁾ 취하의 경우 2007년에는 20% 정도였으나, 2008년도 이후에는 10% 이내로 나타나고 있는데, 취하된 것 중에는 실질적으로 화해로 된 사건도 상당수 포함되었을 것이므로 해결율은 40-50% 정도에 근접할 것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절차를 위한 소요기간도 6개월 이내가 약 90% 내외로서 신속한 해결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종료사유 비율은 <표4>와 같다.

<표4>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종료사유(비율)³⁰⁾

연도	성립	불성립	취하	불응락	기타
2007	32.4	23.5	20.6	23.5	0
2008	40.4	26.8	7.9	23.9	1.0
2009	39.0	31.0	9.8	19.4	0.8
2010	38.7	23.6	9.9	27.1	0.7

(1) 응낙률

인증ADR절차는 화해의 중개를 행하는 절차이므로 상대방으로서 절차에 응할 것인지 여부는 자유이나, 상대방이 절차에 응하는 것은 화해성립을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컨대 화해성립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분쟁당사자 상호 간에 주장을 교환하는 가운데 분쟁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오해가 풀리면 다음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갈 준비를 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게 된다. 상대방의 응낙률³¹⁾은 2007년 및 2008년에는 약 76%였는데 2009년에는 약 81%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다시 73%로 감소하고 있다. 비인증 민간ADR에 있어서의 응낙률은 알 수 없지만 인증제도가 있을 경우 상대방이 납득하여 절차에 응낙하는 인센티브로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³²⁾

29) 같은 2008년의 법원의 민사조정(사법형ADR)의 결과는 성립 약8%,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약69%, 불성립 약 6%, 취하 약16%로 나타나고 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대부분이 이의 없이 확정된다고 보면 그 성립률은 매우 높다(다만 그 사건의 상당 부분이 소비자금융관계라는 점은 주의를 요한다).

30) 日本法務省 홈페이지(<http://japan-adr.or.jp/KANBOU/ADR/>) 통계를 기초로 재구성한 자료임.

31) 여기에서 응낙률은 성립, 불성립, 취하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불응락에 의한 종료를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32) 前掲「仲裁とADR」, 第5號, 45面(青山 發言).

(2) 화해성립률

화해성립률은 2007년에는 약 32%였지만,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약 40% 내외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립률의 높고 낮음을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공권적인 배경을 가지지 않는 민간 ADR기관이 화해의 중개를 행한 성립률로서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4. 소요기간 · 소요횟수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소요기간³³⁾은 <표5>에서 보듯이 6개월 미만에 끝난 경우가 2007년에는 100%, 그리고 2008년에는 약 97%였고, 2009년에는 약 83%정도 였다.

<표5>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소요기간 비율³⁴⁾

연도	1개월 미만	1개월-3개월 미만	3개월 이상-6개월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007	3.9	61.5	34.6	0	0
2008	6.4	60.5	29.8	3.3	0
2009	5.5	41.8	35.6	15.3	1.8
2010	6.3	46.8	33.3	11.9	1.7

또한,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소요횟수는 <표6>에서 보듯이 2007년과 2008년에는 약85%, 2009년에는 약 74%가 3회 이내에서 종결되었다. 이런 점에서 인증분쟁해결절차는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6>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소요횟수 비율³⁵⁾

연도	1회	2회	3회	4회	5-10회	11회 이상
2007	34.6	26.9	23.1	7.7	7.7	0
2008	40.0	28.7	17.9	6.6	6.3	0.5
2009	29.7	25.9	18.8	10.8	14.0	0.8
2010	32.6	28.5	20.2	8.6	10.2	0

33) 절차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 불응낙으로 끝나는 경우는 제외

34) 日本法務省 홈페이지(<http://japan-adr.or.jp/KANBOU/ADR/>) 통계를 기초로 재구성한 자료임.

35) 日本法務省 홈페이지(<http://japan-adr.or.jp/KANBOU/ADR/>) 통계를 기초로 재구성한 자료임.

5. 절차실시상황

인증ADR사업자의 절차실시상황을 2009년의 예로 들어 살펴보면 <표7>과 같다. 취급 대상이 되는 분쟁유형이나 가액별 분포가 다양해지고 있다.

<표7> 인증분쟁해결절차의 실시상황(2009년도)³⁶⁾

유형	가액별(만엔)								당사자별			
	60 이하	60 - 140	140 - 300	300 - 1000	1000 - 1000 0	1000 0 초과	추정 불가	계	쌍방 법인	일방 법인	쌍방 개인	계
부동산매매관련 분쟁	4	6	5	5	1		10	31	4	22	7	33
부동산임대차관련 분쟁	5	8	3	1	1		28	46	14	12	18	44
토지소유권범위관련 분쟁	1	2		1			11	15	1		14	15
맨션관련 분쟁	1	1	1		1		2	6	2	3	1	6
부동산목적 기타 분쟁	2	1					3	6			6	6
근린분쟁	1	1	1				2	5		3	2	5
상린관계 분쟁							4	4			4	4
임금 등에 관한 분쟁	3	2	2	7	1	15	13	43	19	7	17	43
크레디트계약, 방문판매등 소비자거래분쟁		2					1	3		3		3
리스계약관련 분쟁			1				2	3	3			3
보험계약관련 분쟁		1	1	1			3	6	1	5		6
금융거래관련 분쟁	31	25	41	78	69	15	2	261	16	245		261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								0				0
금전거래관련 분쟁	1			1				2		1	1	2
도급계약관련 분쟁	21	17	11	10	10		16	85	48	32	5	85
동산 등 매매관련 분쟁	6	3	3	2	1	1	4	20	5	11	4	20
기타 계약관련 분쟁	1	4	2	4	1	5	18	35	4	25	6	35
교통사고관련 분쟁	9	3		2	1		25	40	3	11	26	40
제조물책임관련 분쟁	4	1	1	1			1	8		8		8
의료관련 분쟁	7	3	5	7	6		21	49	1	28	20	49
기타 불법행위관련 분쟁	20	6	10	4			29	69	2	23	44	69

36) 日本法務省 홈페이지(<http://japan-adr.or.jp/KANBOU/ADR/>) 통계를 기초로 재구성한 자료임.

유형	가액별(만엔)							당사자별				
	60 이하	60 - 140	140 - 300	300 - 1000	1000 - 10000	10000 초과	추정 불가	계	쌍방 법인	일방 법인	쌍방 개인	계
지적재산관련 분쟁								0				0
노동관련 분쟁	10	2	6	1	2		16	37		34	3	37
신분(부부, 친자등)관련 분쟁	1	6	3	5	3		29	47		1	46	47
상속관련 분쟁			1	1	4		7	13			13	13
기타 분쟁	2	1		3			21	27	2	16	9	27
계	130	95	97	134	101	36	268	861	125	490	246	861

유형	대리인사용여부				종료사유별							
	쌍방	일방	모두 없음	계	성립	가능성 없음	쌍방 이탈	일방 이탈	기타	소계	불응락	계
부동산매매관련 분쟁	4	14	15	33	13	9		4		26	5	31
부동산임대차관련 분쟁	14	15	15	44	15	6		7		28	18	46
토지소유권범위관련 분쟁	2	4	9	15	1	4		4		9	6	15
맨션관련 분쟁	1	2	3	6	1	1		1		3	3	6
부동산목적 기타 분쟁	1	3	2	6	2	2			1	5	1	6
근린분쟁	3		2	5	2	2				4	1	5
상린관계 분쟁	1		3	4		3				3	1	4
입금 등에 관한 분쟁	1	29	13	43	20	6	2	5		33	10	43
크레디트계약, 방문판매등 소비자거래분쟁			3	3	1			1	1	3		3
리스계약관련 분쟁		3		3		2				2	1	3
보험계약관련 분쟁	1	3	2	6		2		2		4	2	6
금융거래관련 분쟁	17	44	200	261	128	122		10		260	1	261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				0								0
금전거래관련 분쟁			2	2				1		1	1	2
도급계약관련 분쟁	17	27	41	85	27	19		5	1	52	33	85
동산 등 매매관련 분쟁	3	1	16	20	5	5		2	1	13	7	20
기타 계약관련 분쟁	6	21	8	35	7	8		5		20	15	35

유형	절차실시자별(명)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토지가 옥조사 사	세 무사	행 정서 사	건 축사	의 사	소 비 자 관 련 자	법 률 학 자	전 기 등 기 술 자	기 타	계
도급계약관련 분쟁	61	1					11					1	74
동산 등 매매관련 분쟁	16	2				1			1				20
기타 계약관련 분쟁	34	2				1			3				40
교통사고관련 분쟁	40	4				5			1				50
제조물책임관련 분쟁	10								2	4	3		19
의료관련 분쟁	44							3					47
기타 불법행위관련 분쟁	65	5			1	2	1		4			1	79
지적재산관련 분쟁													0
노동관련 분쟁	28	6	9						1				44
신분(부부, 친자 등)관련 분쟁	26	10				1						25	62
상속관련 분쟁	11	4		2	2				1			1	21
기타 분쟁	24		2		2							4	32
계	786	52	11	21	9	13	18	3	24	4	3	65	1009

6. 인증제도에 대한 평가

일본에서는 인증제도의 현상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긍정적인 평가로써는, 첫째로 ADR기관의 다양화를 들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분쟁유형에 관하여 ADR이 창설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인증제도로 인하여 창설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증제도는 다양한 분야의 ADR 창설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선택의 폭을 늘리는데 기여하고 있다. 둘째로 정책적으로 일정한 분야에서 ADR을 추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금융 ADR에 관해서는 2009년의 금융상품거래법 등의 개정에 의하여 금융 ADR제도가 창설되었고, 소비자 ADR은 2008년에 국민생활센터에 ADR기능이 부여되어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다.³⁷⁾ 이러한 것들은 직접적

37) 나아가 의료 ADR에 관해서는, 변호사회에 의한 적극적인 전문ADR의 설치에 더하여 인증기관도 등장하였

으로 ADR법의 구성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³⁸⁾ ADR법의 입법을 계기로 인증제도를 통하여 질적·양적으로 중요한 분쟁유형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시도되고 있다고 지적된다.³⁹⁾

ADR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써, 첫째로 ADR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것이다. ADR이라는 용어 자체가 일반국민들에게 충분히 주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 2009년 1월에 내각관방에서 행한 ADR에 관한 인지도조사에서 인증ADR서비스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겨우 3.9%에 그치고 있다.⁴⁰⁾ 더구나 개개의 ADR기관의 활동내용이나 취급분야에 관해서는 더욱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⁴¹⁾ 둘째로 ADR이용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문제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DR기관은 많이 인증되었지만 실제의 처리건수는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인증제도의 현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사법제도개혁의 목적인 재판과 나란히 매력적인 선택방식으로서의 ADR의 충실·활성화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V. ADR인증제도에 관한 개정논의

여기에서는 ‘일본ADR협회’가 2012. 4. 2. 일본 법무성에 제출한 ‘ADR법의 개정을 향하여’라는 제언 중 인증제도와 관련된 부분을 요약·정리함으로써 일본에서의 ADR인증제도에 관한 개정방향의 논의에 대하여 살펴보려 한다.

1. 인증절차의 간소화

인증제도의 요건·절차와 관련하여 일본ADR법학회는 ‘인증절차의 간소화’를 제언하고 있다. 즉 “인증 및 인증 후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인증시에 있어서 임원에 관한 서류의 간소화, 임원교체 등 인증 후에 각종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의 제출서류의 간소화, 관청 간의 정보공유에 의한 중복제출의 해소 등이 고려된다”고 하고 있다.⁴²⁾

고, 2010년 3월 이후 후생노동성에서 ‘의료 ADR 연락조정회의’가 설치되어 의료 ADR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38) 금융ADR은 ADR법의 인증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직접 금융청에 의해 지정된 기구이지만, 그 지정요건은 실질적인 ADR의 인증요건에 맞추어, 분쟁해결기관 지정 시 금융청이 법무성과 협의하는 것으로 하여(金商 제156조의39 제3항 등) 양자의 운용에 실질적인 어긋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배려하였다.

39) 山本和彦, 前掲 “ADR法の現状と課題”, 5面.

40) 深山卓也, 前掲論文, 19面 以下 참조.

41) 다양한 분야의 지나치게 많은 ADR기관의 난립으로 잠재고객의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42) 이 제언은 임원의 소속변경, 주소이전 등 사정변경시마다 서류를 제출하는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사정변경시 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연 1회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서 한꺼번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

2. 인증제도의 구체적 요건

인증제도의 구체적 요건에 대하여 2개의 안을 내놓고 있다. A안은 현행법 규정을 유지하는 방안이고, B안은 변호사의 조연에 관한 요건(법 제6조 제5호)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일본ADR협회 내의 ‘ADR법개정실무위원회(work group)’에서는 이 문제가 ADR법 개정에 있어서 최대의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각 업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⁴³⁾ 인증요건이 ADR의 이념이나 실태에 맞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16.1%에 지나지 않아서⁴⁴⁾ 현행법 규정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1안으로 하게 되었다.

3. 인증ADR에 대한 법적 효과의 부여

(1) 민사조정·행정형 ADR과의 제휴에 관한 규정의 정비

제언은 “소송사건, 민사·가사조정사건, 기타사건이 계속되는 법원, 또는 사건이 계속되는 행정형 ADR절차의 주재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건의 성질에 따라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ADR기관에서 화해교섭을 할 것을 당사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명문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ADR과 법원과의 제휴에 관해서는 ADR법 제정시 이미 상당히 깊게 논의된 바 있다.⁴⁵⁾ 일단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ADR을 이용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므로 법원과 ADR기관의 연계는 매우 중요하다.⁴⁶⁾ 설문조사결과 이러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57%, 필요없다는 의견이 20.9%, 특별한 의견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19.8%로 나타나고 있다.⁴⁷⁾

(2) ADR에서의 화해합의에 대한 집행력 부여

이에 대하여 제언은, “ADR에서의 화해합의에 대하여, 당해 인증ADR기관의 선택에 따라 법원의 집행결정에 의한 집행력 부여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행력 부여가 가능한 ADR기관에 있어서, 집행력을 수반하는 조항을 포함한 화해합의를 하는 때에는

적하다고 하고 있다(日本ADR協會, “提言-ADR法の改正に向けて”, 18面).

43) 일본ADR협회 내의 ‘ADR법개정실무위원회’에서는 ADR법개정에 관한 각 ADR기관의 의견을 집약·정리하기 위하여 2011년 6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제언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제언서 말미에 설문조사 결과를 첨부하고 있다.

44) 업계별로는 행정서사회 28.6%, 사법서사회 20.0%, 사업단체 이의 14.3%, 토지가옥조사사회 9.5% 정도가 이 같이 응답하고 있다(上掲 提言, 19面 참조)

45) ADR検討會 資料 6-4 参照.

46) 林圭介, “大阪地裁建築・調停事件における現状と課題”, 『判例タイムズ』第1300號, 判例タイムズ社, 2009.9, 37面 이하.

47) 日本ADR協會, 前掲 提言, 22面.

당해 조항에 관하여 당사자가 집행력을 수락하는 취지의 문언을 요구함으로써 강제집행의 가능성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⁴⁸⁾

V. 결론

일본 ADR법상 인증제도는 시행 후 5년간 착실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분쟁당사자가 분쟁을 해결을 하는데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을 쉽게 하도록 한다는 ADR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인증ADR사업자가 생기고, 사회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충분한 분쟁해결 기능을 담당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ADR기관과 연계하면서 ADR인증제도의 발전과 그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ADR인증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증ADR절차의 이용이 촉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ADR인증제도가 보다 널리 일반에게 알려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현재 ADR의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그 인지도 부족에 있고, 그 결과 이용이 저조하다는 점이다.⁴⁹⁾

일본의 각 인증ADR사업자는 ADR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인지도를 높이는데 협조하기 위하여 ‘일본ADR협회’를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ADR기관 간의 다양한 연계를 추진하기 위해서 동 협회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 정부도 법테라스⁵⁰⁾의 콜센터의 담당자에 대하여, 인증ADR제도와 인증ADR사업자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는 등, 인증ADR절차의 소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⁵¹⁾ 인증ADR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ADR법 제4

48) 이 문제는 ADR법 제정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주제였다. 결국 제정시에는 “ADR법 시행 후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예정되고 있는 평가시에 인증ADR기관의 이용실정을 감안하고 이용자의 권리보호도 충분히 배려하면서 그 채용의 시비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하여 유보하고 있었다(青山善充, “日本におけるADRの將來に向けて-ADR検討會座長レポート-3”, 『裁判外紛争解決手續に關する中長期的な課題』(6)裁判外紛争解決手續の法的効果 참조). ADR을 재판과 마찬가지로 매력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 되기 위해서는 ADR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일본ADR협회의 의견이다. 다만, 이 제언은 집행력 부여에 관하여 각 ADR기관의 판단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각 ADR기관의 선택에 맡기고 있다는데 특징이 있다.

49) 2009년 1월에 내각부대신관방정부 홍보실이 실시한 ‘종합법률지원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는 “ADR에 관해서 어느 정도나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①법원이 행하는 것(민사조정, 가사조정)으로 응답한 사람이 34.3%, ②변호사회, 사법서사회 등의 자격자단체, NPO법인 등 민간단체가 행하는 것으로 답한 사람이 14.7%인데 반하여 ③민간단체가 행하는 것이면서, 법무대신의 인증을 받은 인증분쟁해결서비스라고 응답한 사람은 3.9%에 지나지 않았다(高松宏之, 前掲論文, 17면).

50) 법테라스는 일본사법지원센터의 애칭으로, 법에 의한 분쟁해결에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2006년 4월에 종합법률지원법에 기초하여 설립되고 2006년 10월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다(이에 대하여 자세한, 佐佐木文, “法テラスに寄せられる法的トラブルとADR”, 『法律のひろば』第63卷 第9號, ぎょうせい, 2010.9, 21면 以下 참조)

51) 법무성에서는 지금까지 인증ADR사업자의 업무에 관해서 ‘해결서포트’라는 애칭 및 LOGO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①홈페이지에 있어서 인증분쟁해결사업자에 관련된 상세한 정보제공, ②각종 홈페이지의 배너광고 제공, ③관계기관에 관한 홍보용 팸플렛 배포, ④지하철 가이드 등의 정보지, 프리페이퍼 등의 정부홍보 온라인에 홍보기사 제공, ⑤ 정부홍보방송에서의 홍보 등을 행하고 있다

(<http://www.moj.go.jp/KANBOU/ADR/index.html>).

조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ADR의 이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중심은 조사분석이나 정보제공 등이지만, 가장 큰 역할은 ADR에 대한 재정원조 문제일 것이다. 현재 인증ADR제도는 점차 일본의 사회·경제 중에 뿌리내리기 시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ADR의 충실·활성화가 절실하다는 인식이 ADR법 제정당시와 비교할 때 더욱 높아졌다고 평가되고 있다.

일본의 ADR법상 인증제도의 현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에서도 하루빨리 ADR기본법을 제정하고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민간형 ADR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둘째, 인증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인증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셋째, 인증ADR에 대하여 집행력 등 법적효과를 부여해야 한다. 넷째,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ADR 전반 및 인증ADR제도에 대하여 국민의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다섯째, 인증ADR기관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상찬, “일본의 ADR법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제16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6.12.
 _____, “ADR기본법의 입법론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4.2.
- 전병서, 『대체적분쟁해결처리제도(ADR)도입방안』(용역보고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2005.
- 정선주, “ADR통일절차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민사소송』 제11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6.5.
- 최건호, “일본의 ADR제도”, 『민사소송』제10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6.5.
- 高松宏之, “ADR認證制度の現状” 『法律のひろば』, 第63卷 第9號, ぎょうせい, 2010.9.
- 内堀宏達,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關する法律の概要”, 『法律のひろば』, ぎょうせい, 2005.4.
- 山本和彦, “認證ADR事業者に對するアンケート結果の概要”, 『仲裁とADR』 第5號, 仲裁ADR協會, 2010.
- _____,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促進に關する法律の意義と今後の課題”, 『法律のひろば』 第58卷 第4號, ぎょうせい, 2005.4.
- _____, “ADR法の現状と課題”, 『法律のひろば』, 第63卷 第9號, ぎょうせい, 2010.9.
- 山本和彦·山田文, 『ADR仲裁法』, 日本評論社, 2008.
- 山田文, “日本ADR協會の設立について”, 『法の支配』第161號, 2011.

- , “ADR法制定と理論的問題”, 『法律時報』第77巻 第2号, 日本評論社, 2005.2.
- 小林徹, “日本におけるADRの将来に向けて-‘ADR検討会’座長レポート”, 『裁判外紛争解決促進法』, 商事法務, 2005.
- 深山卓也, “法務省からみたADR法の現状”, 『仲裁とADR』第5号, 仲裁ADR協会, 2010.
- 垣内秀介, “提言「ADR法の改正に向けて」について”, 『NBL』第975号, 商事法務, 2012.4.
- 日本ADR協会, “提言-ADR法の改正に向けて”, 2012.4.
- 林圭介, “大阪地裁建築・調停事件における現状と課題”, 『判例タイムズ』第1300号, 判例タイムズ社, 2009.9.
- 町村泰貴, “ADR新時代”, 『ジュリスト』第1317号, 有斐閣, 2006.8.
- 佐佐木文, “法テラスに寄せられる法的トラブルとADR”, 『法律のひろば』第63巻 第9号, ぎょうせい, 2010.9.
- 竹下守夫, “司法制度改革審議会における審議過程からみたADR法の状況”, 『仲裁とADR』第5号, 仲裁ADR協会, 2010.
- 青山善充, “ADR検討会の議論からみたADR法の現状”, 『仲裁とADR』第5号, 仲裁ADR協会, 2010.
- 河井聡, “日本ADR協会に期待される役割と活動について”, 『仲裁とADR』第6号, 仲裁ADR協会, 2011.

ABSTRACT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Japan's Accreditation System under the ADR Act

Sang-Chan Kim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Act in Japan was proclaimed on December 1, 2004, and five years have passed since the act took effect on April 1, 2007. The ADR Act enables qualified dispute resolution businesses to be certified as ADR business holders through the government's accreditation system, contributing greatly to the advancement of a private ADR. As of June 2012, the number of ADR institutes certified by the government had increased to 112.

Article 2 of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of Japan's ADR Act provides as follows: "The government should review the progress of the Act five years after enforcement, and take measures, if recognized as necessary, based on the results." Any problems revealed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act are expected to be revised after five years of enforcement. To this end, the academic circle established an association called the Arbitration ADR Act Society in 2004, considering issues of the ADR Act and measures to improve the legislation, making policy suggestions, and working to improve management of the act, through seminars, forums, and a journal. The Japanese ADR Association, composed of ADR institutions as members, put forward a proposal entitled "Toward the Revision of the ADR Act" to the Ministry of Justice on April 2, 2012.

This paper intend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e of the accreditation system, one of the most important systems under the ADR Act in Japan, in consideration of ADR Act revision. In particular, the examination includes measures to improve the accreditation system as well as data analysis of the application of accreditation, the current state of accredited institutions, and the ADR performance of accredited ADR businesses. In Korea, an ADR act has not been legislated yet, although the issue is being actively considered. This paper will be a meaningful reference for the Korean government in developing an accreditation system for inclusion in its ADR act in the future.

Key Words: Japan, ADR, Accreditation system, ADR Act,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Judicial system,